

[붙임 4]

장애유형별(임산부 포함)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

○ 편의지원 항목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내용 (복수 신청 가능)	제출서류	
시각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자 (구 1~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 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(구 4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 	
뇌병변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자 (구 1~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대필 · 확대(축소)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 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(구 4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대필 · 확대(축소)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 · 장애인 증명서 	
지체장애인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(구 1~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대필 · 확대(축소)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· 의사진단서 1부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(구 4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(축소)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
	하지	전체 (구 1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
청각장애인	청각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· 보청기 등 지참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증명서 	
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	임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 중 화장실 이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	
	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(시간 연장은 불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사진단서 1부 	

※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(소견서 불인정)

※ 증빙서류(의사진단서/의사소견서/장애인증명서)는 스캔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시 붙임 파일로 제출(채용홈페이지)

○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적용대상	<p>[원서접수 마감일까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■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■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,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
신청방법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: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■ 신청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-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(채용홈페이지)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선택 -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- 증빙서류(의사진단서/의사소견서/장애인증명서)는 스캔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시 붙임 파일로 제출(채용홈페이지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편의지원을 신청 ■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의한 종합병원(상급종합병원 포함)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2023. 4. 30. 이후)받은 것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※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.hira.or.kr→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■ 의사진단서/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,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의사진단서/소견서 예시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○ 장애유형: 뇌병변장애 /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p> </div> ■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,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■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■ 확대문제지는 118%, 150%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, 축소문제지는 82%로 축소 ■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,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